

집합투자기구 정정

- 대상투자신탁 : 현대튼튼대한민국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- 대상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
- 변경내용 : 책임운용인력 (정두선 → 이강국), 부책임운용인력 (이강국 → 정두선) 변경
및 종류S 신설
- 변경대비표(간이투자설명서)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후취판매수수료 유의 문구 추가	8.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.	8.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며, <u>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.</u>
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5. 운용전문인력	책임 및 부책임운용인력 변경	(1)책임운용인력 - 정두선 (2)부책임운용인력 - 이강국	(1)책임운용인력 - <u>이강국</u> (2)부책임운용인력 - <u>정두선</u>
6. 투자실적 추이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	- 작성기준일 <u>(2014.02.03)</u>
II. 매입·환매 관련 정보			
1. 보수 및 수수료	종류B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기간 명시 및 종류S 신설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u><종류(클래스) B></u> - 후취판매수수료 : 환매 금액의 1% 이내 <u><신설></u>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u><종류(클래스) B></u> - 후취판매수수료 : 2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% 이내 <u><종류(클래스) S></u> - 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에 인가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전용 - 후취판매수수료 :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 이내 - 환매수수료 : 30일미만 :

	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이익금의70%, 30일이상 90일미만 : 이익금의30%</u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<u><종류(클래스) S></u></p> <p>- <u>집합투자업자보수 : 0.67 (%)</u></p> <p>- <u>판매회사보수 : 0.35(%)</u></p> <p>- <u>신탁회사보수 : 0.03(%)</u></p> <p>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0.02(%)</u></p>
--	--	---	---

□ 변경대비표(투자설명서)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후취판매수수료 유의 문구 추가	7.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.	7.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며, <u>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책임 및 부책임운용 인력 변경	(1)책임운용인력 - <u>김태형</u> (2)부책임운용인력 - <u>이강국</u>	(1)책임운용인력 - <u>이원복</u> (2)부책임운용인력 - <u>정두선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종류B 기간 명시 및 종류S 신설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u><종류(클래스) B></u> - <u>후취판매수수료 : 환매 금액의 1% 이내</u> <u><신설></u>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u><종류(클래스) B></u> - <u>후취판매수수료 : 2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% 이내</u> <u><종류(클래스) S></u> - <u>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에 인가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전용</u> - <u>후취판매수수료 : 3년미만 환매시 환매 금액의 0.15% 이내</u> - <u>환매수수료 : 30일미만 : 이익금의70%, 30일이상 90일미만 : 이익금의30%</u>

	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<신설></u>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<종류S(클래스) S></u>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67 (%) - 판매회사보수 : 0.35 (%) - 신탁회사보수 : 0.03 (%) -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0.02 (%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	- 작성기준일 <u>(2014.02.03)</u>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라. 운용자산 규모 - 작성기준일	라. 운용자산 규모 - 작성기준일 <u>(2014.02.03)</u>

□ 변경대비표(집합투자계약)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1. <생략> <u>12. <신설></u>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1. <생략> <u>12. 종류S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. ~ 11. <생략> <u>12. <신설></u>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. ~ 11. <생략> <u>12. 종류S 수익증권</u>
제39조(보수)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 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u><신설></u>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 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u><종류S 수익증권></u> <u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7</u> <u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u> <u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u> <u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

<p>제40조(판매수수료)</p>	<p>①~④ <생략> ⑤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 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종류B 수익증권 : 환매금액의 1%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 2. <신설></p>	<p>①~④ <현행과 동일> ⑤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 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종류B 수익증권 : <u>2년미만 환매시</u> 환매금액의 1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 2. <u>종류S 수익증권 :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	--	---

□ 기 타 : 정정 후 원본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